



「KB 스타적금」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명 및 특징

• 상품명: KB 스타적금

• 상품 특징 : KB 스타뱅킹 신규 또는 장기미사용 고객과 최근 6 개월 동안 KB 국민은행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2 거래 조건

구분	내용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 인 1 계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불가(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가입금액 및 저축방법	■ 월 1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 (원단위) ※ 매월(해당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계약기간	■ 12 개월
판매한도	■ 10 만좌(한도 소진 시 판매 종료)
가입채널	■ KB 스타뱅킹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 또는 중도해지 시 이자를 일시에 지급
기본이율 (세금공제 전, 2024.09.06기준)	■ 연 2.0% ※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이율을 적용

- 최고 연 6.0%p
 - ※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 ※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계좌에 가입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 적용
 - ※ 예치기간이 1개월 미만인 중도해지계좌는 우대이율 미적용

구 분	제공조건
환영해요 우대이율 (최고 연 3.0%p)	① KB 스타뱅킹 신규 ^{주1)} 또는 장기미사용 ^{주2)} 고객이 이 적금을 가입한 경우 (연 2.0%p) ② "①에 해당하는 고객"이 이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월 1 회 [금리확인] 화면에서 "스탬프 찍기"를 한 경우, 해당월마다 연 0.2%p 적용 후 합산하여 제공 (최고 연 1.0%p)
함께해요 우대이율 (연 3.0%p)	적금 신규 전일 기준 최근 6개월 ^{주3)} 동안 KB국민은행 상품 ^{주4)} 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만 보유한 고객

우대이율

(세금공제 전, 2024.09.06기준) 주 1) 적금 신규일 전월 말일 기준 KB 스타뱅킹 미가입고객 (가입 후 해지 이력이 있는 고객 제외)

- 주 2) 적금 신규일 전월 말일 기준 6개월 이상 KB 스타뱅킹 로그인 이력이 없는 고객
- 주 3) 6개월 전 신규해당일(없는 날짜인 경우 6개월 전 해당월의 말일) ~ 신규 전일 (예시 1) 적금 신규일이 2024.09.30인 경우.

최근 6개월 대상기간은 "2024.03.30(6개월 전 신규해당일) ~ 2024.09.29(신규 전일)" (예시 2) 적금 신규일이 2024.10.31 인 경우,

최근 6개월 대상기간은 "2024.04.30(6개월 전 해당월의 말일) ~ 2024.10.30(신규 전일)" *4월은 31일(6개월 전 신규해당일)이 없는 달이므로 30일(6개월 전 해당월의 말일)로 적용

주4) 거치식/적립식 예금(외화예금 제외), 청약, 펀드, 신탁(퇴직연금 제외), 방카슈랑스, 대출

【함께해요 우대이율 유의사항】

- 대상기간 중 취소계좌는 보유이력에 미포함되며, 철회계좌는 보유이력에 포함됩니다.
- 명의변경계좌는 해당 계좌의 신규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반영됩니다.
- **금리우대쿠폰**: 가입 시 금리우대쿠폰을 적용한 경우 쿠폰의 우대금리를 최종이율에 더함
 - 금리우대쿠폰은 신규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미적용
 - 금리우대쿠폰의 적용방법 및 유의사항은 금리우대쿠폰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KB 금융쿠폰 서비스에 따름

최종이율

(세금공제 전, 2024.09.06기준) ■ 최저 연 2.0% ~ 최고 연 8.0%

※ 최고이율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모두 포함한 이율임

만기이자 계산방법 (산출근거)

■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입금일~만기일 전일)/365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미만 절사)

※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 ㅇ 월 30 만원씩 12 개월 납입시 세전 156,000 원 (최고금리 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 ㅇ 월 30만원씩 12개월 납입시 세전 39,000원 (기본금리 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만기후이율

(세금공제 전, 2024.09.06기준) ■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경과기간	이율 (단위 : 연 %)
만기후 1개월 이내	기본이율 X 50%
만기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본이율 X 30%
만기후 3개월 초과	0.1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중도해지이율

(세금공제 전, 2024.09.06기준) ■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 적용

예치기간	이율 (단위 : 연 %)
1개월 미만	0.1
1 개월 이상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 해지일 기준 확정된 우대이율

(예시 1) 가입일이 2024.09.30 인 경우, 예치기간 1개월 미만 기간 : 2024.09.30 ~ 2024.10.29 (예시 2) 가입일이 2025.01.31 인 경우, 예치기간 1개월 미만 기간 : 2025.01.31 ~ 2025.02.27

중도해지이자 계산방법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 미만 절사)
 - * [예시] '환영해요 우대이율①(연 2.0%p)' 및 '함께해요 우대이율(연 3.0%p)' 해당 고객이 스탬프 찍기 3회 달성(연 0.6%p) 후 예치기간 3개월 시점에 해지
 - →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연 2.0%) + 해지일 기준 확정된 우대이율(연 2.0%p+연 3.0%p+연 0.6%p)



예금자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대상

재예치	■ 불가능
일부인출	■ 불가능
만기앞당김 지급	■ 불가능
질권설정	■ 가능
양도 및 담보제공	■ 양도: 가능 ■ 담보제공: 가능 ※ 계좌 잔액의 95%까지 예금담보대출 가능
계약해지방법	■ KB스타뱅킹, 인터넷뱅킹,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 고객센터 해지 시 만기해지만 가능하며, 미성년자 명의 적금은 해지할 수 없음 ■ 비대면으로 신규한 계좌는 만기자동해지의 신청 없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근거계좌(국민은행 출금계좌)로 입금됨(단, 예적금에 압류 등 해지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쥐, 가압류주2, 질권주3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1)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주2)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주3)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활용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자동이체	 ■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해야합니다. ■ 자동이체 금액은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신청 및 이체 가능합니다. ■ [KB국민은행 계좌간자동이체] -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자동이체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이체되지 않습니다. - 이체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하고, 이체일이 달력에 없으면 해당월의 마지막 날 이체합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 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 ^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주)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 이전/해지 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주1)}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1년이내 (해당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주2)} 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 소비자의 요구가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주1)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 주 2) 해지요구서: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은 판매 한도 소진 시 별도 안내 없이 판매 종료됩니다.
- 예치기간 1개월 미만 해지 시 계약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